

禮의 窓으로 다시 바라본 병자호란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국사학전공

조교수 허태구(許泰玖)

1. 당대의 맥락에서 병자호란 보기

인조 15년(1637) 1월 30일¹ 丙子胡亂은 국왕의 出城 항복이라는 조선 왕조 개창 이래 유례없는 사태와 함께 막을 내렸다. 해방 이후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이 전쟁을 커다란 失敗의 反面教師로서 인식하면서, 병자호란 연구를 통해 외교적²·군사적³·정치사상적⁴ 교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⁵ 병자호란이란 주제의 특성상, 관련 연구는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진로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라는 현재적 과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흔히 참조되기도 한다.

전쟁 전후 대외 교섭과 戰況의 개략적 전개를 究明한 선행 연구의 업적은 크게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쟁의 敗因과 斥和論의 성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척화론자들을 포함한 당대인에 대한 전반적 오해를 拂拭하지는 못했다.

1 본고의 날짜 표기는 음력 날짜를 사용한다.

2 대표적 연구로는 韓明基, 2009,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3 대표적 연구로는 柳在城, 1986, 『丙子胡亂史』,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4 대표적 연구로는 金容欽, 2006, 『朝鮮後期政治史研究 I: 仁祖代 政治論의 分化和 變通論』, 혜안

5 위의 세 연구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병자호란 발발과 참패의 원인으로 집권 세력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서 비롯된 외교적, 군사적 대응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집권 세력을 포함한 군 지휘관들의 무능과 비겁을 패전의 근본적 원인으로 보는 해석은 『仁祖實錄』을 비롯한 『丙子錄』(羅萬甲) 등의 당대 기록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기록들 대부분이 현재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광해군과 최명길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평가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오해는 패전의 원인 또는 책임론과 결부되어 對明義理⁶란 事大主義的 가치에 매몰되어 국제 정세를 오판한 척화론자들, 이른바 崇明排金이라는 仁祖反正의 몽상적이고 무책임한 명분에 사로잡혀 나라를 敗亡 직전까지 몰고 간 무능한 국왕 仁祖와 집권 세력이라는 통념적 이해를 존속시켰다.⁷ 반면, 광해군과 최명길은 三田渡의 굴욕을 미리 내다보고 방지하기에 힘썼던 극소수의 先知者이자 국가와 백성에 대한 책임감을 지닌 예외적인 정치가로서 높게 평가되었다.⁸ 병자호란의 어이없고 참담한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러한 해석은 일면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전쟁을 수행한 당사자들이 지금의 우리와는 매우 다른 신념과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평가이다.

異民族의 침입에 대한 韓民族의 항쟁이란 시각에서 본다면, 병자호란의 戰史에서 긍정적 교훈을 줄 만한 인물, 자랑스러워할 만한 승전 사례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현대 한국인의 시각에서 볼 때, 1592~1598년의 임진왜란, 1619년의 사르후 전투(薩爾滸之戰)⁹ 1627년 정묘

6 明에 대한 義理. 對明義理論에서 따온 것. 대명의리론은 조선후기 사료에 흔히 보이는 '明에 대한 義理를 지켜야 한다'는 類의 주장을 지칭하는 근대 학자들의 助語이다. 학자들에 따라 大明義理論라고도 한다. 조선후기 대명의리론의 전개에 대해서는 劉奉學, 1988, 「18·9세기 大明義理論과 對淸意識의 推移」 □한신논문집□ 5, 한신대학교; 李泰鎮, 1994, 「조선후기 對明義理論의 변천」 □아시아문화□ 10,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鄭玉子, 1998,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00~116쪽 등 참조. 단, 필자는 대명의리론이 명이 멸망하는 1644년 이후 對淸復讐論과 함께 제기되었다는 설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정옥자, 1998, 앞의 책, 15쪽). 後金(淸)과의 화친을 반대하는 斥和論의 목적은 다른 아닌 明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척화론은 대명의리론에 포섭되는 개념이 된다.

7 이러한 시각에 대한 비판은 吳洙彰, 2005, 「淸淸과의 외교 실상과 병자호란」 『한국사시민강좌』 36, 일조각, 102~112쪽 참조.

8 반면 소수이기는 하지만 광해군 중립 외교의 한계를 지적한 연구도 이미 학계에 제출된 바 있다(吳洙彰, 2005, 앞의 논문, 109~112쪽; 桂承範, 2005, 「조선감호론 문제를 통해 본 광해군대 외교 노선 논쟁」 『朝鮮時代史學報』 34, 조선시대사학회, 27~29쪽).

9 명과 후금이 광해군 11년(1619) 遼寧省 蘇子河 유역에서 遼東 지역의 패권을 놓고 벌인 전투. 조선은 이때 명의 요청으로 정예 鳥銃兵 1만 명 이상을 파병하였다. 그러나 朝·明 연합군은 후금군에

호란이란 연이은 안보적 위기를 겪은 후 10여 년도 채 지나지 않아 반복된 병자호란의 참패와 척화론의 沸騰, 대명의리론의 존속이란 현상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른바 對明義理를 결사적으로 고수하려 했던 조선시대인들을 성급하게 비판하기에 앞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먼저 이해하려고 한다면,¹⁰ 17세기 전반을 살았던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당대의 사료와 현상에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管見이지만, 병자호란의 역사성과 당대인의 내면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의 실마리는 그들의 中華¹¹ 인식과 밀접히 연관된 '禮의 실천'이란 쉼을 통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禮의 실천'을 둘러싼 조선과 淸의 갈등

조선과 후금은 정묘호란 이후에도 歲幣의 수량, 조선인 포로의 刷還, 開市 무역, 요동에서 도망한 漢人 난민의 수용, 평안도 철산 앞바다 椴島에 주둔 중인 明軍에 대한 지원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긴장과 갈등의 수위를 점점 높여갔다. 조선이 근본적으로 명과의

이해 격파 당하였고, 조선군 사령관인 都元帥 姜弘立은 패잔병과 함께 후금에 항복하였다.

10 물론 이같은 필자의 시도가 척화론을 견지하였던 인조를 포함한 당시 사대부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함은 아니다. 병자호란의 피해는 당시의 백성들, 특히 노약자와 부녀자들에게 집중되었다. 인조 정권에 대한 爲政者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평가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정밀하게 究明되어야 한다.

11 中華는 본디 황하 유역에서 중국 고대 문명을 이룩한 華族(또는 夏族)의 자기우월적 인식에서 기원하였다. 이후 중화 인식은 배타적 자기 정체성으로도 기능하여, 중화와 夷狄의 구분, 즉 華夷의 구분을 낳게 되었다. 중화의 3대 요소로는 ① 漢族이라는 인종, ② 중국 또는 中原이라는 지역, ③ 儒敎 이념에 바탕을 둔 禮敎 문화가 언급된다. 한편 중화 문화를 일찍부터 수입하여 발전을 도모하였던 주변 민족이나 국가는, 자신들을 중화 또는 小中華로 인식하고 이에 근거해 자부심을 갖는 패턴을 고대로부터 보여 왔다. 17세기 조선인의 중화 인식은 對明義理 또는 對明事大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君臣之義’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인식한 반면에, 후금은 궁극적으로 명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재 충돌은 불가피하였다.¹²

충돌의 방아쇠를 격발시킨 것은 홍타이지(Hongtaiji)의 황제 즉위였다. 인조 14년(1636) 2월 후금은 대규모 사신단을 파견하여, 황제 존호 進上에 형제국 조선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압은 조선 朝野의 격렬한 반발만 불러 일으켰고, 후금의 사신단은 쫓기듯 漢陽을 떠나야만 하였다. ‘하늘 위에 두 태양이 뜨지 않듯이 하늘 아래 황제는 大明의 황제만 존재한다’는 것이 당시 조선 士大夫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 믿음이었다. 척화론자였던 洪翼漢은 上疏를 올려 후금의 汗이 스스로 황제가 되려는 것은 알 바 아니지만, 존호를 올리는 데 조선이 참여하는 것은 절대 不可하다고 주장하였다.¹³ 홍타이지를 황제로 인정하는 것은 先代王을 포함하여 天下 사람들과 後世에 부끄러움을 남기는 행위이며, 對明事大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명의 군사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여건 속에서 나온 그의 발언은 자신의 내재적·당위적 기준에 의해 주장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같은 해 3월 1일 인조는 척화의 뜻이 담긴 下諭를 내리며 “強弱과 存亡의 형세를 헤아리지 않고 한결같이 正義로써 결단을 내려 그 글을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였다.¹⁴

이 글이 바로 귀환하던 후금 사신단이 탈취하여 병자호란 開戰의 빌미로 삼았다는 유명한 敎書로서, 존호 진상에 동참을 요청한 후금의 사신이 아무 성과 없이 漢陽을 떠난 직후에 반포되었다. 인조는 후금 사신단이 압록강을 넘어간 직후인 3월 20일에도 求言의 敎書를 내리면서 다시 한 번 “強弱을 따지지 않고 義에 의거하여 배척하여 끊었으므로, 전쟁의 禍가

12 본 장은 필자 박사학위논문의 2장 1절과 3절과 이후 발표한 여러 논문들을 조합하여 서술하였다 (許泰玟, 2009, 『丙子胡亂의 정치·군사사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3 『仁祖實錄』 권32, 인조 14년 2월 丙申(21일)

14 『仁祖實錄』 권32, 인조 14년 3월 丙午(1일) “上下諭于八道曰...今者此虜 益肆猖獗 敢以僭號之說 託以通議 遽以書來 此豈我國君臣所忍聞者乎 不量強弱存亡之勢 一以正義斷決 卻書不受...”

조만간에 닥칠 것이다.”라고 예고하였다.¹⁵ 앞의 두 敎書에서 인용된 부분에 주목하면, 인조 정권이 국제 정세와 자국의 군사력을 오판하여 아무런 대비 없이 전쟁을 自招하였다는 일반의 상식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앞서 보았듯이, 인조대 대외 정책의 배경에는 척화와 대명의리에 기반한 국내 여론의 엄청난 압력이 존재하였다. 이것을 부정할 경우 야기될 체제 위기의 폭발력은, 이른바 중립 외교가 초래한 광해군의 정치적 고립과 이를 틈타 擧兵에 성공한 仁祖反正이 반증한다.

전운이 더욱 고조된 인조 14년(1636) 11월, “방어할 준비를 하고자 하면 형세가 이와 같고(=사회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전쟁 준비가 완벽하지 않고: 인용자), 羈縻할 방책을 세우고자 하면 이름 있는 선비의 무리가 모두 불가하다고 말한다. 적은 오고야 말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¹⁶라는 인조의 한탄은 당시 조선이 처한 진퇴양난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¹⁷

마땅한 군사적 대안이 不在하였던 조선은, 후금 사신단의 귀환 이후에도 羅德憲과 李廓을 瀋陽에 사신으로 파견하여 양국 관계를 이전처럼 형제 관계로 유지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파견은 오히려 흥타이지의 조선 親征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인조 14년(1636) 4월 11일, 황제가 된 흥타이지의 즉위를 선포하는 의식이 瀋陽故宮 밖 南郊의 天壇 주변에서 열렸다. 나덕헌과 이확 역시 황제 즉위를 축하하는 신하들의 행렬에 강제로 끌

15 『仁祖實錄』 권32, 仁祖 14년 3월 乙丑(20일) “敎書曰...噫 丁卯之變 羈縻之計 蓋出於不得已也 十年之間 恐喝日甚 今乃以不忍聞之說 託以通議而嘗我 我不計強弱 據義斥絕 兵革之禍,迫在朝夕...”

16 『仁祖實錄』 권33, 仁祖 14년 11월 壬子(12일) “...上曰 欲爲守禦之備 則形勢如此 欲爲羈縻之策 則名士輩皆曰不可 賊來而已 將如之何”

17 최근 연구에 의하면, 명의 援兵 파견 요청을 거부했던 광해군은 물론이고, 인조반정의 집권 세력도 後金(淸)의 군사적 위협과 조선의 전력 열세를 분명히 인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방어책을 집권 초기부터 고민하고 추진하였으나, 사회경제적 여건의 不備와 군비 확충에 따른 民心 이반의 우려 때문에 효과적인 대책을 끝내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한다(許泰玖, 2012, 「인조대 對後金(對淸) 방어책의 추진과 한계-守城 전술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61, 조선시대사학회 참조).

려 나갔지만, 구타를 당할지언정 拜禮만은 끝내 행하지 않았다.¹⁸ 이튿날에는 東郊에 강제로 끌려가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를 조상들에게 고하는 제례에 나갔으나 끝내 배례를 행하지 않았다.¹⁹ 홍타이지는 이들을 처형할 경우 자신이 먼저 丁卯年의 盟約을 어겼다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하며, 나덕헌과 이확을 그대로 되돌려 보냈다.

이들은 淸 太宗 홍타이지가 인조에게 보낸 國書를 휴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서의 형식과 내용이 참람하였으므로 국경 근처인 通遠堡에 도착했을 때 그 국서를 몰래 雜物 속에 버려두고 나왔다. 그들은 국서의 내용만 베껴 가지고 귀국하였다. 청 태종의 국서는 大清의 皇帝를 자칭하고 조선을 '爾國'이라 호칭하였으며, 국서 말미에 찍은 印文도 後金國 汗의 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⁰ 다시 말해, 청의 국서는 前例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前禮를 위반한 것이었다. 조선의 사신단이 굳이 眞本 국서를 두고 필사본을 갖고 온 것을 살펴보면, 皇帝號를 僭稱한 국서가 당대 조선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잠깐이나마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저항은 물론 본인의 선택과 의지에 따른 것이지만, 좀 더 나아가 대명의리와 연관된 당시 조선 사회 일반의 절대적 분위기를 고려하면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귀국 이후, 이들은 청 태종의 僭越한 국서를 받은 즉시 개봉하여 수정을 요청하거나 당당하게 돌려주지 못했다는 罪目으로 오히려 탄핵까지 받고 유배길에 올라야만 했다. 備邊司마저도 '拜禮하지 않은 것은 정상을 참작할 만하지만, 이들이 義理에 의거하여 자결하지 않은 점은 놀랍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여야만 할 정도였다.²¹ 나덕헌과 이확이 살았던 시대의 분위기는 지금과 확실히 달랐던 것이다.

18 『淸太宗實錄』 권28, 天聰 10년 4월 乙亥(11일); 羅萬甲, 『丙子錄』, 「記初頭委折」

19 스즈키 카이(鈴木開), 2017, 「丙子の乱直前の朝淸交渉について(1634-1636)」, 『駿台史学』 159, 駿台史学会, 52~54쪽 참조.

20 『仁祖實錄』 권32, 인조 14년 4월 庚子(26일)

21 『仁祖實錄』 권32, 인조 14년 4월 庚子(26일)

여하튼, 그들은 목숨을 걸고 배례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청 태종의 황제 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상징적으로 그러나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를 滿·蒙·漢의 모든 신하들이 찬동하였지만, 형제국 조선만은 동의하지 않은 셈이 되었다. 홍타이지는 황제 즉위 과정에서 이렇게 비워진 한 조각의 퍼즐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親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잠시 '禮의 실천'이라는 맥락을 고려해 본다면, 홍타이지가 병자호란에 직접 참전할 경우 그 궁극적 목표 가운데 하나가 인조의 배례, 즉 三拜九叩頭²²가 되리란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

조선 사신단의 귀환 이후에도 조선은 청과 교섭의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청은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를 기정사실화한 채 조선과의 교섭에 임하였다. 아울러, 조선에 王子와 斥和臣을 인질로 보내지 않으면 出兵할 것이라 협박하였다.²³ 그러나 조선은 끝내 청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조선 내의 격렬한 척화론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병자호란은 이러한 조·청 양국 간의 정치적·의례적 갈등이 끝없이 폭주하다가 도달한 마지막 종착역이었다.

3. 南漢山城 농성과 講和 협상의 쟁점들

병자호란 開戰²⁴ 직후 청군 선봉대의 기습으로 漢陽에서 江華島로 가는 길을 차단당한 인조는 인조 14년(1636) 12월 14일 저녁 무렵에야 가까스로 남한산성의 남문을 통과하였다.

22 청측 사료에는 三跪九叩頭로 나온다.

23 趙慶男, 『續雜錄』 丙子年 11월 23일

24 장사꾼으로 가장한 청군 선봉대 중 일부가 압록강을 건넌 날짜는 丙子年(인조 14) 12월 8일이었다.

청군의 본대는 병자년(인조 14) 12월 10일에 압록강을 건넜다. 두 날짜를 현재 사용하는 西曆으로 환산하면 전자는 1637년 1월 3일, 후자는 1637년 1월 5일이 된다(丘凡眞, 2012,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 민음사, 17쪽 참조).

곧이어 인조의 뒤를 따른 청군의 선봉대가 12월 16일 남한산성에 도달하여 성을 포위하기 시작하였다. 청은 조선 전역에서 인조를 구원하러 온 勤王 부대를 모조리 격퇴하였다. 아울러, 후속부대의 증원으로 자국의 전력이 속속 강화됨에 따라 농성 중인 조선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점차 높여 갔다. 인조 15년(1637) 1월 중순에 이르면 양국 간 戰力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전쟁의 승부는 이미 결판난 것이나 다름없었고, 明軍을 포함한 외부의 지원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²⁵

흥미로운 점은 남한산성 농성시 양국간 講和 협상의 쟁점이 영토의 할양이나 전쟁 배상금 등의 문제라기보다 國書의 형식과 항복의 절차 등이었다는 사실이다. 대청제국의 수립을 儀禮的 절차에 의해 확인받으려고 한 청은 ① 稱臣을 표기한 조선의 國書, ② 斥和臣의 압송, ③ 국왕 인조의 출성 항복을 강화 성립의 전제 조건²⁶으로 내세워 조선을 집요하게 압박하였다. 金瑬와 崔鳴吉을 비롯한 극소수의 主和派 신료들이 국가와 백성의 안녕을 위하여 이 전제 조건을 부득이 받아들여자는 입장인데 비하여, 金尙憲과 鄭蘊을 비롯한 다수의 斥和派 신료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역설적인 사실은 주화론을 주장한 이들이 주로 비변사에 포진한 大臣들이었음에 비해, 척화론을 주장한 이들은 주로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言官이나 전·현직의 하급 관료, 在野의 儒生들이었다는 점이다. 예상과 달리, 척화론을 끝까지 견지하였던 자들은 인조반정을 일으킨 西人系 功臣 세력이 아니었다.²⁷ 오

25 본 장에서 서술한 남한산성 농성과 조선 君臣의 대응에 대해서는 許泰玖, 2010, 「병자호란 講和 협상의 추이와 조선의 대응」, 『朝鮮時代史學報』 52, 조선시대사학회에 주로 의거하였다.

26 첫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은 명 황제에 대한 조선 국왕의 의리, 두 번째 조건은 자신의 신하에 대한 국왕 인조의 의리와 관련되었다. 척화의 동기가 대명의리를 주장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후자 역시 명에 대한 의리로 환원되는 것이며, 결국 세 가지 모두 대명의리의 실천과 관련되는 사안이었다.

27 대명의리와 척화에 대한 이러한 광범위한 지지 때문에 인조반정의 집권 세력이 '崇明排金'을 擧兵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다. '송명배금'은 인조반정 집권 세력만의 명분이 아니었다. 오히려, 당시 조선 사대부 누구나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명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 선택된 것이라고 볼 수

히려, 남한산성의 농성 말기에 접어들자 조정에 포진한 인조반정의 공신 세력들은 인조에게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음을 상기시키며 출성향복을 집단적으로 건의하였다.²⁸

한편, 청은 농성 종반기에 접어들면서 남한산성을 함락시킬 충분한 전력을 완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공략을 자제하였다. 출성만 면제해 준다면 영토나 歲幣 등의 물질적 보상을 마음껏 챙길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은 인조의 자진 출성을 시종일관 집요하게 요구하여 끝내 관철시켰던 것이다. 청 태종은 이로써 조선과의 군신 관계를 온 천하에 확인시키고, 자신의 관대함과 인자함을 보이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⁹ 후일, 청은 이때의 기억을 일명 '三田渡碑'(정식 명칭: 大清皇帝功德碑)에 새겨 영원히 역사에 남겼다.

講和 협상 과정의 검토를 통해 새로이 부각되는 사실은 칭신을 표기하는 국서의 형식에 대한 조선 君臣의 태도이다. 이들은 고립무원의 절대적 열세 속에서도 對明義理 또는 對明事大를 상징하는 의례 가운데 하나인 국서의 형식을 쉽사리 변경하려 하지 않았다. 인조 15년(1637) 1월 18일에 작성되어 다음 날 청 태종에게 전달된 조선 측의 국서는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을 놓고 많은 논란이 벌어졌다.³⁰ 이 국서는 앞으로 조선이 藩國으로서 文書와 禮節을 이에 맞게 행하겠다는 다짐과 아울러 인조의 출성 조건을 완화하여 성 위에서 望拜하는

있다(桂勝範, 2008 「계해정변(인조반정)의 명분과 그 인식의 변화」, 『南冥學研究』 26, 慶尙大學校 慶南文化研究院 南冥學研究所, 451~453쪽 참조).

28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1월 丙寅(26일)

29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1월 庚申(20일) “遣李弘胄等 持前書如虜營 受其答書而還 其書曰... 命爾出城面朕者 一則見爾誠心悅服 二則樹恩於爾 復以全國 示仁信於天下耳 若以計誘 則朕方承天眷 撫定四方 欲赦爾前愆 以爲南朝標榜 若以詭計取爾 天下之大 能盡譎詐取之乎 是自絕來歸之路矣 斯固無智愚之所共識者也”

30 1월 18일에 발송된 국서는 반송되었으며, 1월 19일에야 청이 일단 접수하였다(承政院日記 55책, 인조 15년 1월 戊午(18일) “洪瑞鳳等 爲虜所却 不得傳國書 而自上招見 鳴吉啓曰 今又不捧國書矣 上曰 何以爲之耶 曰 臣等先通則龍胡出來 蓋先爲來待 而托稱將帥招之而去矣 俄而金芻屎出來言 馬夫大不來 日且已暮 還爲入去云云矣”; 清太宗實錄 卷33 崇德 2年 1월 己未(19일) “朝鮮國王李倭 遣其閣臣洪某尙書崔某侍郎尤某 齎書至營請成 書曰 伏奉明旨...”).

것을 허락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³¹ 조선은 이 국서를 통해 청이 요구한 군신 관계를 국서의 형식을 통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최초로 밝혔다. 척화파 김상헌이 울며 찢어 버리고, 주화파 최명길이가 웃으며 다시 붙였다고 膾炙되는 유명한 국서가 바로 이것이다. 많은 논란 끝에 '폐하'라는 두 글자는 여러 신하들의 반대로 끝내 삭제된 채 발송되었지만, 청은 다시 국서를 보내 척화신의 압송과 인조의 출성을 조선측에 요구하였다.³² 인조 15년(1637) 1월 21일, 조선은 결국 稱臣을 표기한 국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발송하게 된다. “朝鮮國王臣李倭, 謹上書于大清國寬溫仁聖皇帝陛下”로 시작되는 이날의 국서에는 청의 崇德 연호도 기입되었다.³³ 『淸太宗實錄』에는 당시 접수한 국서의 全文이 실려 있는데, 그 서두에 “이날 조선국왕이종이 신하를 칭하며 奏文을 올려 당도하였다. 그 글에 말하기를...(是日 朝鮮國王李倭稱臣以奏書至 書曰...)”이라고 강조하였다.³⁴ 이상의 정황은 당대인들에게 '稱臣'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또 이것이 어떤 형식을 통해서 확인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농성 말기 조선은 江華島의 함락과 청군의 맹렬한 紅夷砲 공격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저항 의지를 상실하고 청의 무조건 항복 제의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47일 간의 남한산성 농성은,

31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1월 戊午(18일) “其書曰 朝鮮國王謹上書于大清國寬溫仁聖皇帝【此下有陛下二字 爲諸臣所爭 而抹去】伏奉明旨...今之所願 只在改心易慮 一洗舊習 學國承命 得比諸藩而已 誠蒙曲察危憫 許以自新 則文書禮節 自有應行儀式 講而行之 其在今日 至於出城之命 實出仁覆之意 然念重圍未解 帝怒方盛 在此亦死 出城亦死 是以瞻望龍旌 分死自決 情亦戚矣 古人有城上拜天子者 蓋以禮有不可廢 而兵威亦可怕也”

32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1월 庚申(20일)

33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1월 辛酉(21일) “遣李弘胄等 奉國書如虜營 其書曰 朝鮮國王臣姓諱 謹上書于大清國寬溫仁聖皇帝陛下 臣獲罪于天 坐困孤城 自分朝夕就亡...”

34 이 국서가 『淸太宗實錄』에는 1월 20일 기사에 실려 있지만, 이것은 청실록의 편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때문으로 보인다(『淸太宗實錄』 권33 崇德 2년 1월 庚申(20일) “是日 朝鮮國王李倭 稱臣以奏書至 書曰 朝鮮國王臣李倭 謹上書于大清國寬溫仁聖皇帝陛下 臣獲罪于天 坐困孤城 自分朝夕就亡...”).

1637년(인조 15) 1월 30일 藍色으로 물들인 平服³⁵ 차림의 국왕 인조가 남한산성의 西門³⁶을 나와 三田渡 근처의 受降壇에서 청 태종 홍타이지에게 사죄와 臣屬의 의미인 삼배구고두의 배례를 올림으로써 마무리되었다.

병자호란의 항복은 청과 조선이 兄弟 관계에서 君臣 관계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 위상의 변화는 후일 양국 간 정치적·경제적·군사적 현안의 처리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겠지만, 평소에는 다양한 외교 의례를 통해 반복되고 확인되는 구조였다. 예를 들면 국서의 용어와 형식, 年號와 正朔의 사용, 使臣의 자리 배치와 접대 예절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례 가운데 국가간의 위상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국왕의 삼배구고두례였다. 이상의 儀禮는 모두 조선의 事大處가 명에서 청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명에 대한 義理³⁷를 부모에 대한 의리와 같다고 비유하곤 하였던 조선 君臣들의 의식 세계에서는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인조가 출성 항복을 끝까지 회피하고자 했던 동기에는 국왕의 위엄이 손상된다는 수치심, 인질로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禮의 실천’이라는 맥락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도 國是와 다름없이 광범위하게 지지받았던 대명의리를 명백히 부정하는 삼배구고두의 배례를 만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국왕 자신이 직접 행해야만 한다는 고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다. 의례의 형식과 행위자의 내면을 지금의 우리처럼 상황에 따라 분리해서 사고하기 쉽지 않았던 당대인들에게, 인조의 출성 항

35 청의 입장에서 보면 인조는 죄를 지은 몸이기 때문에 袞龍袍를 입을 수 없었다.

36 원래 君主는 城의 南門으로 출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문을 통해 인조가 나아간 것 역시 사죄의 의미를 담고 있다.

37 義理는 당대의 용법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만 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나 당위를 의미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한 인간이 의리를 지켜야 하는 근거가 어떤 은혜나 이득에 있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에 대한 의리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은 나를 잘 길러 주신 부모의 은혜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천리(天理: 보편적 도덕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 또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다.

복은 잠시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일회성의 부득이한 행위로 용납되기 어려웠다. 반면, 청 태종은 삼배구고두례를 포함한 삼전도 降禮 전반의 儀式을 통해 황제가 된 자신의 권위를 청과 조선의 많은 신하들이 보는 자리에서 확실하게 인정받으려고 했었을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인조는 칭신을 표기한 최초의 국서(1월 21일 발송)에서 만약 자신이 출성향복을 한다면 향후 조선에서 임금 노릇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청 태종에게 호소하였다.

臣에게 딱하고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陛下에게 아뢰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풍속은 박절하고 까다로워 예절이 가혹할 정도로 꼼꼼합니다. 임금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常度와 다르면 놀란 눈으로 서로 쳐다보며 괴이한 일로 여깁니다. 만약 이런 풍속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마침내 나라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丁卯年 이후로 조정의 신하들 사이에 사실 다른 논의(=척화론: 인용자)가 많았으나, 그것을 힘써 진정시키려고 하면서 대뜸 질책하지 못했던 것은 대체로 이러한 점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성 안에 가득 찬 모든 官員과 士庶가 위태롭고 급박한 事勢를 목격하여, 귀순하자는 의논에 대해서는 모두가 똑같은 말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城에서 나가는 한 조목에 대해서만은 모두들 “高麗朝 이래로 없었던 일이다. 죽는 것을 자신의 분수로 여기고 나가지 않겠다. 만약 大國의 독촉이 그치지 않는다면, 후일 얻게 되는 것은 쌓인 시체와 텅 빈 성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 조만간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발언한 바가 이와 같은데, 더구나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나라가 망한 이유가 오로지 적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설사 폐하의 은덕을 입어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人情을 살펴보건대 반드시 臣을 임금으로 기꺼이 받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밑줄은 인용자).³⁸

농성 당시 金尙憲과 鄭蘊을 비롯한 척화파 신료들은 국가의 존망보다는 대명여리의 준수

38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1월 辛酉(21일)

가 더 중요하다고 역설하곤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청을 물리칠 뚜렷한 군사적 대안을 갖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취지의 주장들은 병자호란 이전이나 이후에도 내내 '正論'으로 조선에서 인식되었으며,³⁹ 宋時烈과 같은 척화론의 계승자가 조선후기 역사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김상헌이 “비록 無益할 줄 알면서도 할 만한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으니, 이 일(=稱臣한 국서를 보내는 일: 인용자)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아뢰었다. 임금이 “무익하지만 할 만한 일은 어떤 일인가?”라고 물었다. 김상헌이 “저들이 만약 王子와 大臣을 인질로 청하면 이는 할 만한고, 歲幣를 올리고 땅을 떼어 달라고 하면 그 또한 할 만합니다. 지금 그들이 출성을 요구하는데, 한 번 굴복한 뒤에 만약 君臣의 의리를 고집하며 멋대로 명령을 내리면 장차 어찌하겠습니까?”라고 아뢰었다. 임금이 “혹 그러하더라도 天心이 화를 내린 것을 후회한다면 그래도 벗어날 수 있다. 會稽의 災厄⁴⁰도 이 방법으로 벗어났으니,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김상헌이 “...온 성의 臣民들이 화친을 바란다고 말하는 것은 강화를 이르는 것이니, 만약 강화보다 굴욕적인 항복이라면 民心이 모두 분개할 것입니다. 비록 이 일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온 성의 신민들은 혹 생존할 수 있을지 몰라도 至尊(=仁祖: 인용자)께서는 결코 보전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아뢰니, 임금께서 “경은 출성을 염려하는 것인가? 결단코 출성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⁴¹

39 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1월 丁酉(29일) “尹昉曰 國家危亡 在此一舉 雖欲親呈 何可不從 李蔡曰 何忍親受乎 上曰 雖是正論 彼若怒去 則更無可爲矣 李貴曰 不和則已 和則不可不從”; 仁祖實錄 권33, 인조 14년 12월 丁亥(17일) “上泣曰 年少之人 思慮短淺 論議太激 終致此禍 當時若不斥絕彼使 則設有此禍 而其勢必不至此矣 僉曰 年少淺慮之人 誤事至此 上泣曰 此論實是正論 予亦不能拒絕 以至於此 實關時運 何可咎人(밀줄은 인용자)” 등.

40 春秋時代 越王 句踐이 吳王 夫差와 싸우다가 패하여 會稽山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한 일. 구천은 후일 수모를 참고 국력을 길러, 오 나라를 멸망시키고 부처를 自決시켰다.

41 『承政院日記』 55책, 인조 15년 1월 戊午(18일)

위의 사료에서 보이듯이, 당대인들에게 人質·歲幣·割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는 君臣之義를 상징하는 국서의 형식이었고, 이때의 군신지위는 대명의리와 직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홍익한과 같은 척화론자들이 진정 우려하였던 것은, 명의 문책이나 보복이라기보다 대명의리의 포기할 경우 받게 될 歷史와 後世의 비난이었다. 척화의 논의에서 명이라는 특정 국가를 고려하는 것은 부차적인 요소이었다. 좀 더 과감히 말해보자면, 당시 강화 협상에 임한 조선의 君臣이 끝까지 고민하였던 문제는 실질적 항복의 여부라기보다, 禮를 통해 구현되는 항복의 형식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대다수 조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대명의리라는 大義와 칭신을 표기한 국서의 형식 등은 결코 분리될 수 없었다.

척화론자와 비슷한 心性은 종교 상징을 대하는 현대의 종교인들에게서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종교 상징을 통한 종교 의례의 실천은 독실한 믿음을 가진 해당 종교인에게 단순한 예배 절차라기보다 자신의 존재 이유 및 삶의 가치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 상징의 훼손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모욕으로 해석되어 폭력 사태를 초래하기도 한다. 종교의 역사를 훑어보면, 殉教者와 背教者를 구분할 때 聖像이나 聖畫와 같은 종교 상징이 동원되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 때문이다. 유사한 현상으로는, 특정 종교와 연관된 여성 가림 복장의 고수 또는 舊韓末 단발령에 대한 반발 등을 거론할 수 있다. 17세기 조선의 척화론자가 전력의 열세를 비교적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과의 강화를 끝까지 반대한 사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그들이 명에 대한 굴종적·의존적 의식 때문에 국제 정세를 무시·오판했다고 이해하기보다, 순교자적 맥락에서 재 고찰하는 것이 당대의 실상에 좀 더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4. 두 개의 對明認識을 통해 본 새로운 전망

본 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수렴되는 당대 조선인이 견지하였던 척화론, 대명의리론,

중화 인식 전반의 성격을 정리해보겠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 본 조선사회 전반의 對明義理나 對明事大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당대의 맥락에서 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斥和論은 전쟁의 승리를 자신하거나 明의 지원이나 問責을 의식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었다.⁴² 따라서 이것을 단순히 明에 대한 事大主義나 淸에 대한 韓民族의 투쟁이란 시각에서 바라본다⁴³면 척화론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분법적 시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당대인의 對明認識에 두 가지 차원의 인식이 혼재되어 있음을 간파하고 이것을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특정 국가로서의 明에 대한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보편 문명인 中華를 상징하는 明에 대한 인식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흔히 명이 멸망한 이후 朝鮮中華主義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후자가 분리·출현·강화된 것으로 이해하였다.⁴⁴ 그러나 필자는 명에 대한 이 두 가지 인식이 명·청 교체기 이전부터 이미 조선인들의 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틀 속에서 명과의 관계도 유지되었다고 생각한다.

조선을 개국한 新進士大夫들은 明을 중심으로 하는 中華 질서 속에 제후국으로서 조선의 위치를 자각하면서,⁴⁵ 조선의 禮制와 文物을 中華의 기준에 맞추어 개편하려고 자발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들에게 禮制는 중화 질서 편입의 중요한 기준이었다. 이들은 중화 문명의 표준으로 인식되었던 明의 예제와 문물을 선별하여 조선 사회에 적용함으로써 中華의 이상을

42 당시, 명과 청의 엄청난 국력 차이를 고려해 볼 때, 당대 조선인들이 명·청 교체를 상상하기란 어려울 수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명·청 전쟁의 추이와 상관없이 명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43 光海君과 三學士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공존하는 학계와 대중의 분위기는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44 劉奉學, 1995, 『燕巖一派 北學思想 研究』, 일지사, 57~63쪽 참조.

45 『高麗史』 편찬 과정에서 고려 諸王의 역사를 本紀가 아닌 世家로 편입한 것은 이러한 의식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고려사 편찬에 따른 難題와 창의성에 대해서는 崔鍾奭, 2012, 「『고려사』 세가 편목 설정의 문화사적 함의 탐색」 『韓國史研究』 159, 한국사연구회 참조.

조선 땅에서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조선이 명의 禮制와 문물을 받아들하려고 한 시도는 명의 압력이나 권고를 의식한 것이라기보다는 中華 문명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내면화한 결과였다.⁴⁶ 따라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명에 대한 정치적·문화적 예속의 심화로 규정할 수 없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명으로 상징되는 中華 문명에 대한 조선인들의 인식, 즉 中華 인식이 질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에 기인한다.⁴⁷ 中華의 禮教 질서가 조선에서 고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사회 배부에서 이러한 中華의 예교 질서를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광범위한 인식이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⁴⁸

고려말 조선초 중화 인식의 질적 전환과 관련하여, 최근 조선초 禮制 개편의 맥락을 自主·事大의 이분법을 탈피하여 재해석한 최근의 논의를 참고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⁴⁹ 고려말 이전의 事大와 中華 文物의 수용에 따른 禮制 개편이 당대인들에게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받아들여진 데 비해, 고려말 이후의 사람들에게 예제의 개편은 보편적 中華 질서 속에서 자신의 分義를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었다. 이것은 당대 조선인들에게 굴욕적인 것으로 생각되지도 않았고, 명의 시선과 상관없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올바른 일로 여겨졌다. 예제 개편 및 그것의 함의가 性理學을 사상적 토대로 하는 당시 신진사대부들의 지향에 부합하였을 것임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6 이것은 조선이 명의 확인이나 간섭이 불가능한 지방 城隍祭를 『洪武禮制』에 근거하여 개편하려 한 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崔鍾奭, 2008, 「조선시기 城隍祠 입지를 둘러싼 양상과 그 배경-高麗 이래 질서와 '時王之制' 사이의 길항의 관점에서-」 『韓國史研究』 143, 한국사연구회 참조).

47 崔鍾奭, 2017, 「고려 후기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의식'의 탄생과 내향화-조선적 자기 정체성의 모태를 찾아서-」 『민족문화연구』 7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3~15세기 천하질서하에서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정체성」 『역사비평』 121, 역사비평사 등 참조).

48 고려에서 가장 華夷論的 시각을 가진 성종조차 皇帝國 제도를 적극 도입했는데, 박재우는 이것이 王과 皇帝의 차이에 대한 고려 화이론자들의 이해가 깊지 못한 데서 기인하였음을 지적하였다(朴宰佑, 2005, 「고려 君主의 국제적 위상」 『韓國史學報』 20, 고려사학회, 53~55쪽 참조).

49 崔鍾奭, 2016, 「중화 보편, 딜레마, 창의를 메커니즘-조선 초기 문물제도 정비 성격의 재검토-」 『조선시대 예교담론과 예교질서』(박종천 외 10인 共著), 소명출판 참조.

그러므로 조선전기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심화된 中華 인식⁵⁰은 특정 국가로서의 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종속을 초래하지 않았다. 이미 여러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명의 정치·제도·학술·인심을 비판하는 당대 조선인의 기록은 명에 대한 긍정적 서술만큼이나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⁵¹ 물론 이러한 기록이 중화 문명의 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나 자주독립의 선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선조 7년(1574)년의 北京 使行에서 趙憲이 중화 문명에 대한 뜨거운 동경을 표출함과 동시에 중화의 이상과 괴리된 명의 현실에 분노를 표출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⁵² 이와 같은 현상은 명이라는 특정 국가를 조선인이 체득한 중화

50 한명기는 '再造之恩'에 대한 보답 또는 명에 대한 부채 의식을 한중 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킨 주요 動因 중 하나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韓明基, 1999, 『임진왜란과 한중 관계』, 역사비평사, 353~406쪽; 한명기, 2009,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150쪽). 필자 역시 당대의 무수한 사료에서 보이듯이 척화론이 '재조지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척화론이 '재조지은'이 없었다면 제기 불가능한 담론이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許泰玖, 2017, 「丁卯·丙子胡亂 전후 主和·斥和論 관련 연구의 성과와 전망」 『史學研究』 128, 한국사학회, 196~203쪽 참조).

계승범은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對明 事大에 대한 절대적 분위기를 지적하면서 중종대의 변화상에 주목하였다(桂勝範, 2006, 「파병 논의를 통해 본 조선전기 對明觀의 변화」 『大同文化研究』 5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참조).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역시 과연 중종대에 '새롭게' 형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논증이 요구된다. 中華 인식의 질적인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麗末鮮初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도 나왔다(崔鍾爽, 2010, 「조선초기 '時王之制' 논의 구조의 특징과 중화 보편의 추구」 『朝鮮時代史學報』 52, 조선시대사학회). 각각의 제안은 전환의 시기뿐만 아니라 당대 조선인이 갖고 있었던 중화 인식의 본질과 형성을 어떻게 파악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다. 성리학의 확산과 중화 인식 심화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정교한 설명이 필요하다.

51 특정 국가로서 명의 현실에 대한 조선인의 비판적 시선은 吳恒寧, 1992, 「17세기 전반 서인산림의 사상-김장생·김상헌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8, 한국역사연구회, 52쪽; 曹永祿, 1996, 「朝鮮의 小中華觀-明清交替期 東亞三國의 天下觀의 變化를 中心으로-」, 『歷史學報』 149, 역사학회, 116~117쪽; 禹景燮, 2012, 「朝鮮中華主義에 대한 학설사적 검토」 『韓國史研究』, 한국사연구회, 253~254쪽 등 참조.

52 후마 스스무(夫馬進) 著·鄭台燮 외 4인 共譯, 2008, 제1장 「만력 2년 조선사절의 '중화'국 비판」,

문명의 기준에 의해 비판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조선은 禮制를 비롯한 명의 문물 제도를 자발적으로 이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명에서 유행하고 명나라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이라 해도 陽明學처럼 자신들이 설정한 중화 문명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완강히 거부하였다.⁵³

조선과 명의 事大·字小 또는 朝貢·冊封 관계는 분명 禮制上 上下位階的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명의 요구나 지시가 아무런 제한 없이 관철되는 것은 현실에서만 아니라 그 원리상으로도 성립하기 어려웠다.⁵⁴ 양국의 관계는 세력뿐만이 아니라 義理와 名分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제후국의 分義 못지않게 천자국의 分義도 양국의 관계를 규범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독자의 강역과 인구를 다스리는 外藩 제후의 통치권은 침해받지 않는 것이라고 당대인들은 생각하였다.⁵⁵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만, 재조지은의 형성기인 임진왜란 당시 발생한 조·명 양국의 수많은 외교 현안과 갈등,⁵⁶ 天子가 책봉한 조선의 국왕을 다름 아닌 철저한 中華 이념의 소지자로 알려진 이른바 ‘純正性理學者’들이 反正를 통하여 축출한 사실 또한 모순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중화 문명의 상징으로서의 明이 보편이라면 특정 국가로서의 明은 특수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보편의 틀 안에서 특수를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따라서, 호란기의 斥和論 역시 明이라는 특정 국가에 대한 맹목적 종속 또는 국제 정세에 대한 오판에서 기인한 결과라기보다는, 명이 상징하는 중화 문명에 대한 가치를 당대의 조

『연행사와 통신사』, 신서원 참조.

53 尹南漢, 1982, 『朝鮮時代の 陽明學 研究』, 집문당, 177~180쪽 참조.

54 權善弘, 2010, 「유교문명권의 국제관계: 책봉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20~126쪽; 2014, 「유교의 예(禮)규범에서 본 전통시대 동아시아국제관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5-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56~160쪽 참조.

55 崔鍾爽, 2013, 「조선초기 국가 위상과 ‘聲教自由」, 『한국사연구』 162, 한국사연구회, 19~23쪽 참조.

56 예를 들어, 재조지은의 가장 큰 수혜자인 宣祖조차 명의 講和 추진에 앞장서 반발하였던 일을 상기해보자.

선의 君臣과 士大夫가 모두 공유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방증하듯이, 척화론자들이 진정 우려하였던 것은 명의 사후 問罪 또는 보복이 아니라 대명의리의 포기를 통한 윤리와 도덕의 붕괴였으며,⁵⁷ 歷史와 後世의 비난이었다.⁵⁸ 척화의 논의에서 明이라는 특정 국가를 고려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주화·척화의 문제는 외교적 진로의 선택이 아닌 문명과 야만, 인간과 짐승을 택하는 실존적 결단의 문제였다. 외교적 현안에 대한 강경론(매파)과 온건론(비둘기파)의 대립은 동서고금의 보편적 현상이지만, 대개의 경우 그 본질이 國家의 안전 또는 國益의 추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벌어진 노선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조선의 주화·척화 논쟁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對明義理의 고수를 위해서는 국가가 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척화론자들의 발언도 이해의 실마리를 얻게 된다. 무력적 타개를 포함한 여타의 대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는 주화파의 주장대로 화친 이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러나 兩次的 胡亂 당시 척화론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것은 조선이라는 국가라기보다 (명이라는 특정 국가도 아닌) 明으로 상징되는 中華라는 보편 문명이었다.⁵⁹ 정묘

57 『仁祖實錄』 권39, 인조 17년 12월 戊申(26일) “前判書金尙憲上疏曰...自古無不死之人 亦無不亡之國 死亡可忍從 逆不可爲也 有復於殿下者曰 人有助寇讐攻父母 殿下必命有司治之 其人雖善辭以自解 殿下必加以王法 此天下之通道也 今之謀者以爲 禮義不足守 臣未暇據禮義以辨 雖以利害論之 徒畏強隣 一朝之暴 不懼天子六師之移 非遠計也”

58 『仁祖實錄』 권33, 인조 14년 10월 丁丑(6일) “玉堂...仍上劄曰...噫 我國之於天朝 名分素定 非若羅麗之事唐宋也 壬辰之役 微天朝則不能復國 至今君臣上下 相保而不爲魚者 其誰之力也 今雖不幸而大禍迫至 猶當有殞而無二也 不然 將何以有辭於天下後世乎”

59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北伐論의 첫 번째 의리(第一義)가 明을 위한 복수보다는 春秋大義의 고수에 있다고 송시열이 생각했다는 제자 權尙夏의 회고는 매우 시사적이다(宋時烈, 『宋子大全』 부록 권19, 「記述雜錄-尹鳳九」 “鳳九曰 聞清慎春諸先生 皆以大明復讎爲大義 而尤翁則加一節 以爲春秋大義 夷狄而不得入於中國 禽獸而不得倫於人類 爲第一義 爲明復讎 爲第二義 然否 (先師=權尙夏: 인용자)曰 老先生之意 正如是矣”).

호란 당시 李貴에게 國은 오랑캐와의 화친을 통해서라도 보존해야 하는 것이었다면,⁶⁰ 張維에게 不義로 보존된 國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것이었다.⁶¹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척화론자들에게 國이란 그것이 中華 문명의 보편적 가치를 담지하고 실천하고 있었을 때에만 유의미했던 것으로 보인다.⁶²

이같은 점을 고려해야만, 중화 문명에 대한 이해 수준과 수용 양상이 조선과 달랐던 베트남과 일본이 명·청 교체 전후에 보인 (조선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무덤덤하거나 實利 추구적인 반응이 優劣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당대의 비교사적 맥락에서 온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⁶³ 아울러 청군의 北京 점령은 별다른 저항 없이 맞이하던 명의 遺民들이, 이후의 薙髮令에는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⁶⁴ 청이 만약 체발을 조선에 강요했다면, 그 저항의 강도는 훨씬 더 격렬하고 지속적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1637년의 출성 항복과 1644년의 북경 함락을 명·청 교체와 華夷 질서의 변동이란 차원에서 이해하지만, 당대인들이 받아들인 보편 문명으로서의 中華의 위상은 조선 내에서 전혀 동요되지

60 『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2월 丁未(10일) “貴曰 不和則亡 何爲此言”

61 『仁朝實錄』 권15, 인조 5년 2월 丁未(10일) “維曰 國雖亡 豈以不義圖存乎”

62 최명길의 주화론 역시 대명의리의 추구라는 차원에서 보면 척화론과 對極的 위치에 있는 주장이 아니었다. 다만, 그는 國亡 직전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독자의 영토와 백성을 가진 ‘外服 諸侯國 조선이 명에 대한 義理를 어느 정도까지 희생하며 지켜야하는가’라는 문제에서 척화론자들과의 견해가 크게 갈린 것뿐이었다. 대명의리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로 이 시기를 지배하였기 때문에 파생된 딜레마는 ‘과연 외복 제후국 조선은 어떻게, 어느 선까지 희생하면서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된 기준 설정과 실천의 문제였다(許泰玖, 2013, 『崔鳴吉의 主和論과 對明義理』, 『韓國史研究』 162, 한국사연구회 참조).

63 劉仁善, 2012,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창작과 비평사, 228~233쪽; 로널드 토비 지음 許恩珠 옮김, 2013, 『일본 근세의 ‘쇄국’이라는 외교』, 창해, 160~164쪽 참조(原書는 Ronald Toby, 2008, 『鎖國』という外交, 小學館).

64 이시바시 다카오 지음 洪성구 옮김, 『대청제국 1616~1799』, 145~149쪽, 휴머니스트(原書는 石橋崇雄, 2000, 『大清帝國』, 講談社).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교상의 의례와 대상은 비록 漢族 왕조인 明에서 滿洲族 왕조인 淸으로 전환되었지만, 양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념·수사·외교 절차의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만, 조선후기 大報壇 및 萬東廟 祭禮의 시행도 새로운 해석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본고는 이상과 같이 조선인들의 中華 인식이 심화된 결과, 당대인들의 對明 인식 속에 '두 개의 對明 인식'-① 특정 국가로서의 明에 대한 인식, ② 보편적 중화 문명을 상징하는 明에 대한 인식-이 존재함을 斥和論과 對明義理論이 제기되는 맥락을 통해 試論적으로 입증해 보았다.⁶⁵ 이러한 가설을 정밀한 논증 아래 조선시대의 對明·對淸 관계 전반에 적용시켜 본다면, 기존의 自主와 事大라는 이분법으로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던 많은 현상들이 '두 개의 對明 인식' 또는 '두 개의 對淸 인식'이라는 틀 안에서 새로이 설명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65 대명의리의 성격 규정 또는 중화 인식과 관련하여, 조선시대의 對明 인식을 필자와 유사한 취지에 서 두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李用熙·申一澈 對談, 1977, 「事大主義-그 現代的 解釋을 중심으로-」, 韓國民族主義, 서문당; 禹景燮, 2006, 「송시열의 華夷論과 朝鮮中華主義의 성립」, 震檀學報 101, 진단학회 등). 예를 들어, 이용희는 조선의 對明事大를 명분에 의한 사대와 힘에 의한 사대로 구분하면서, 당대인들은 전자가 아닌 후자에 심한 굴욕감을 느꼈다고 설명하였다. 우경섭은 당대인의 대명인식을, 혈통과 왕조를 초월해 존재하는 문화적 진리, 즉 道의 담지자를 상징하는 '관념적 중화로서의 명나라'와, 여러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 '역사적 실체로서의 명나라'로 구분하였다.